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05·6·9 조례 제 563호
개정 2009·10·9 조례 제 796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11·11 조례 제1181호
일부개정 2019·7·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61호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때에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전문개정 2009·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1, 2019·12·27>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12·27>

제4조(사전공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3·9·27>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9·7·1>

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목개정 2015·11·11]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삭제 <2019·12·27>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11>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5. 12. 31까지 인정하고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2009·10·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부칙 <2015·11·1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과세대상 65세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미과세대상 등록장애인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인 사람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15. 11. 1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				
설치대수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p>「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이 천 시 장 귀하</p>				
관련 부서 확인필	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노 인(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